

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『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)』을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7일

I 사업목적

-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치비용 지원을 통하여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II 사업개요

-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지원 재원 : 13억원
- 접수기간 : '23. 2. 17.(금) 09:00부터 ~ 재원 소진 시까지
- 접수처 :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(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, 2층 산업보건센터)
- 문의 : 신동민 과장 032-510-0564
- 신청방법 :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인천광역시본부 방문)

【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】

☞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→ 사업소개 → 재정지원 → 건강일터 조성지원 → 공지사항

- ※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서 접수 중단 및 공모방식(일괄접수 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대상자 선정)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음(접수·선정절차 변경 시 공모 방법 등은 별도 공고)
- ※ 우편 접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수취일시를 기준으로 처리
- 운영방안 : 인천광역시본부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·접수
- 지원품목 :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

III 지원내용

○ (한도액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)

○ (지원비율)

신청 대상	지원비율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*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	공단 판단금액의 70%
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	공단 판단금액의 50%

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○ (참여제한)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【지원제외 대상】

- 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❹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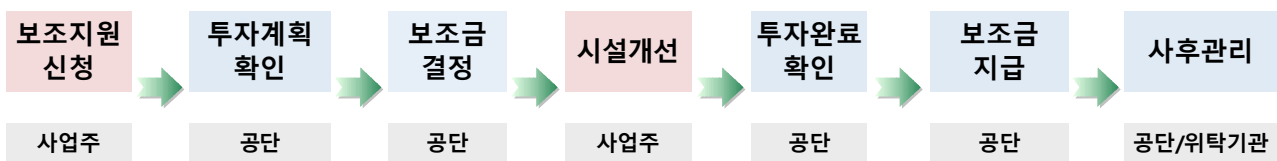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품목)

- 관리대상유해물질·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-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-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
 - ※ 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에 한하여 지원 가능(단,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)
 - ※ 사회적 현안, 산업재해발생 현황, 고용노동부고시, 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

○ (지원조건)

-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조리흙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「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(KOSHA GUIDE W-26-2022)」에 준하여 설치
 - ※ 조리흙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
-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(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)
-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
-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
- 양산품의 경우 공단에서 정하는 표준품목별 지원가능금액 기준에 따라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

V 세부 추진절차



① (보조지원신청) 공단 인천광역본부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(사업주)

-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

- (제출서류)

제출 서류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⑥ 사업자 등록증
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⑧ 설계근거, 도면(계통도 등) 등
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주)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(제작원가계산서)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

② (투자계획 확인) 사업장 방문 또는 서명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,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(공단)

③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
-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보조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- 공사품의 경우 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나 사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(투자완료) 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를 반드시 제출[공사(제작)품 보조자금 산정기준(별첨4) 참조]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결정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'공사원가계산서' 제출 가능하며 별첨1에 따라 보조금 지원가능금액 결정

-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④ 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(사업주)

-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
- 공사업체,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

⑤ 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구 분
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③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④ 구매.설치 계약서 사본
④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
⑤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⑥ 지급보증보험 증권
⑦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⑧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
주) 자금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④ 생략

※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<지급보증보험 증권>

- ▶ 보험 계약기간은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 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으로 적용
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3.10.13.(지급보증기간: 4년)
보험기간: '23.9.30. ~ '27.9.29.
- ▶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로 함
- ▶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: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

- 공단은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
 -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[공사(제작)품 보조지급 산정기준(별첨) 참조]
 - 설비 설치 장소,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
 - 제출한 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, 사후 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,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
- ⑥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- ⑦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 완료 다음연도부터 사후관리 실시(3년)

VI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안내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신청사업장의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이 발생할 수 있음

【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보조지원 부정수급 금지】

- ▶ 건강일터조성지원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물품 판매 또는 공급업체(공사업체)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·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-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 -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

【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】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VII 기타사항

- 건강일터 조성지원 재정지원사업은 공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
- 당해연도 공단 보조사업(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, 안전투자혁신 사업,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사업 등)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에서 제외
 - ※ 단, 타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 가능
 - ※ 건강일터조성지원(휴게시설 설치지원) 보조지원 사업장의 경우 중복 지원 가능

VIII 문의처

-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신동민 과장: 032-510-0564

별첨1

공사(제작)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

1.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지급요청 시)
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내역서 포함)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고, 보조금 지급(투자완료확인)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*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보조금** 확정

* 원가계산용역기관[행정안전부 예규 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)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
** 견적서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단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
-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(부가세 제외) 중 일부를 소요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4천만원 미만	4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공사금액 3,000만원인 경우
(총 소요금액) 3,000만원(공사금액) + 4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3,040만원
(보조확정금액) 3,0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2,128만원

2. 공사(제작)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신청 시)

-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, 2021.12.1.)에 따라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 적용

-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 계산서 금액의 80%*를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

* 공단 연구용역 및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공단 보조금 지급가격 산정기준

- 원가계산서 작성 비용 일부(부가세 제외)을 소요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3천만원 미만	3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계산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50만원	70만원	10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공사금액 2,000만원인 경우
(총 소요금액) 2,000만원(공사금액) + 50만원(원가계산 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2,050만원
(공단 판단금액) 2,050만원×80%(가격산정기준) = 1,640만원
(보조확정금액) 1,6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1,148만원